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별 개정이유서

2024. 5.

금 융 위 원 회

1.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안 제160조제2항 신설)

가. 개정 이유

-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분기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개선 필요

나. 개정 내용

-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까지 상장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주권 신규 상장법인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 공시가 추가 되어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안 제161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사모 전환사채 등의 경우 기존 주주와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발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정보가 주주나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되도록 개선 필요
-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 그 결과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발생

나. 개정 내용

- 전환사채권의 발행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가 주주나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모 전환사채 발행 등의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주·투자자 권리 보호 강화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

(안 제429조제3항)

가. 개정 이유

-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비상장법인보다 투자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 위반시 일부 상장법인의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존재해 개선 필요

* 자본시장법은 유통공시 과징금 한도를 상장법인은 정률(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20억한도)), 비상장법인은 정액(20억원)으로 규정
→ 소규모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보다 과징금 상한이 적게 산정될 수 있음

나. 개정 내용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장법인 경우에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시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조정함으로써 제재 과징금 제도 합리성 제고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

(안 제429조제4항)

가. 개정 이유

-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이 다른 공시위반시 과징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 등이 지속 제기

나. 개정 내용

-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